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17110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7.09.1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5.14.]

www.fishkings.co.kr

어사출토

정보공개서

어판왕 어업회사법인(주)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어판왕 어업회사법인(주)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59 어판왕 어업회사법인(주)

가맹문의(점포개발팀): 032-888-1342

대표전화 : 032-888-1342

팩스번호 : 032-891-1998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 연혁
3. 가맹사업 업종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6.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8.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I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별첨1] 2022년, 2023년, 2024년 재무제표

별첨2] 거래할 품목 리스트

별첨3]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별첨4]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 확인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가서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어판왕 어업회사법인(주)	어사출또 외 2개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59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6.12.15	2016.12.15	김규정	032-888-1342	032-891-1998
	법인등록번호	134911-0075928	사업자등록번호	860-86-0055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규정	어사출또 외 2개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59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규정	032-888-1342	032-891-199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 어사출또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어사출또	
상 호	어사출또 ○○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 표 (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3783390000
그 밖의 영업표지		상표미등록
		상표미등록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7,045,228	7,011,605	33,623	17,330,340	-921,150	-1,756,380
2023년	6,027,509	6,674,191	-646,681	12,213,576	-803,566	-806,699
2024년	5,166,786	6,476,116	-1,309,330	6,773,188	-179,534	-662,648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규정	대표이사	2016.04~현재	어사출토 대표	회사업무 총괄
			2016.12~현재	어판왕 어업회사법인(주) 사내이사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0	1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어판왕 어업회사법 인(주)	가맹 사업 경영	2019.11~현재	어사또(등록번호: 20191157)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어판왕 어업회사법 인(주)	가맹 사업 경영	2021.1~현재	만만어사 밀키트 (등록번호: 20212184)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	2016.11.22	출원: 4120160007895	(주)해중산	2026.11.22.

			등록: 4103783390000		(2026.11.22.)
--	--	--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상기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로부터 [어사출또]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어사출또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6년 04월 23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6년 04월 22일)

2. 어사출또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어사출또	어사출또	김규정	2016.04~2016.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17-50
(주)어판왕	어사출또	김규정	2016.12~2019.06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104(가학동)
어판왕 어업회사 법인(주)	어사출또	김규정	2019.06~2024.01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104(가학동)
어판왕 어업회사 법인(주)	어사출또	김규정	2024.02~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59

3. 어사출또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기타외식	소분류(주요상품) 활어회
어사출또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어사출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70	70	-	45	45	0	45	45	0
서울	29	29	-	20	20	-	20	20	-
부산	1	1	-	2	2	-	2	2	-
대구	1	1	-	1	1	-	1	1	-
인천	4	4	-	4	4	-	4	4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1	1	-	-	-	-	-	-	-
경기	27	27	-	12	12	-	12	12	-
강원			-	-	-	-	-	-	-

충북	3	3	-	3	3	-	3	3	-
충남	3	3	-	3	3	-	3	3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1	1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어사출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99	4	0	33	2	70
2023	70	4	0	29	2	45
2024	45	0	0	0	0	45

6. 어사출도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어사출도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 본부	어판왕 어업회사법인 (주)	어사또	20191157	한식	18/-	23/0	19/0
		만만어사 밀키트	20212184	기타도소매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어사출도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6개월미만 영업제외
		연간평균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45	457,556	8,406	1,882,132	41,270	22,431	201	
서울	20	635,716	13,025	1,882,132	41,270	22,431	201	
부산	2	해당없음						5곳미만
대구	1	해당없음						5곳미만
인천	4	해당없음						5곳미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12	329,961	4,561	665,398	16,634	25,559	393	
강원	-	해당없음						
충북	3	해당없음						5곳미만
충남	3	해당없음						5곳미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과 공급액 추정매출액 (공급품목X3=매출액)을 근거로 기재한 것입니다. 다만, 상기 매출액에서 배달매출은 알기가 어려워 산입되지 않아 실제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45	1,81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별도의 지역 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일에 예치가맹금을 수령하고 있어 예치기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기관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어판왕 어업회사법인(주)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2)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어사출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외장공사 및 내부옵션공사, 별도공사(철거공사, 냉·난방기 공사, 전기증설, 소방 공사 등),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16,500			
가맹비	11,000	계약체결 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개점 전 :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개점 후 :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	5,50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잔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0			
계약이행 보증금	10,000	계약체결 시	- 물품대금 미지급, 가맹본부 공급 물품 파손 등 - 계약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 등의 의무)의 미이행	

- ※ 계약이행보증금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물품 대금 및 파손, 로열티, 광고·판촉 부담금, 교육·훈련비 등의 미납액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담보
- ※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 계약의 기간만료 및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영업표지 철거 완료된 이후에 잔존 채무 및 손해배상액 정산 후 잔액 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은 보증금 성격으로 계약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금액은 가맹점사업자의 성실한 계약이행 및 위반 횟수나 위반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90%)
합계	26,500	14,000
가맹비	11,000	9,900
교육비	5,500	5,500
계약이행보증금 (부가세 없음)	10,000	1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43,000	4,767			30평(99m ²) 빈 점포 기준
인테리어	별첨1_1.	66,000	2,200	별도의 약정에 따름	공사 전 계약 취소	※브랜드, 건물형태, 면적, 현장상황, 품목 및 수량 등에 따라 상이
간판/싸인	거래상대방 참고	77,000	2,567			
의탁자						

주방						※실제 공사 시 브랜드, 건물형태, 면적, 현장상황 등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음
수족관						
회다이						
익스테리어						
소모품						
POS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외부공사(갈바, LED조명), 냉난방기, 철거공사, 전기증설공사, 돌출간판, CCTV, 어닝, 정수기, 인터넷, 전화 기타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①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지급 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금액은 [어사출포] 개설에 필요한 최소비용으로써 점포 면적이 99㎡ 미만이라 하더라도 99㎡를 기준으로 견적됩니다.
-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 ③ 위 표 항목(정보공개서 V-1 내역 중 거래상대방 강제항목은 제외)은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설비 정보 제공비 및 검수비(이하 “검수비”라 한다)로 총 가맹점 면적에 대하여 3.3㎡당 일금 오십오만원 (550,000원)<VAT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를 통하여 가맹점의 설비를 하는 경우, 상기 비용은 포함되며 일부만을 의뢰 할 경우, 당사는 검수비를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귀하의 입지 선정에 최대한 노력하나, 가맹점 입지 선정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입지 선정의 최종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 승인한 입지에 대해 당사에서는 매출이나 영업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맹희망자는 매출/임차료 등에 대한 적합성과 해당 입지가 법적/구조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1) 귀하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여 오는 경우 :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규 가맹점의 위치를 허가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을 권유함. 2) 귀하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할 경우 :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3) 가맹본부가 점포 입지를 선정해 놓은 경우 :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입지 안내 → 가맹희망자와 담당자가 현장 확인 → 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을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가맹희망자가 합니다. ※ 점포계약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 승인(선정)기준(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 기존 점포와의 상권중복 여부 - 점포의 전용면적 - 가시성 및 접근성 - 주변의 상권 및 음식점의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가능성 등을 종합적 고려, 입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최소 점포 기준 99㎡ 이상,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아래 로열티 책정기준 참조	매월 말일		소멸성	
리스료		해당 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통지 후 2주일 이내	미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별도의 협의에 따름	미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개시 전		교육 필요시 지급
경영지도비	가맹본부	※아래 경영지도비 책정기준 참조	지도 실시 이전에 지급	지도 개시 전	개시 시작 이후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 없음				
영업지역		해당 없음				

보장금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교체, 보수 2일 전	교체, 보수 전	교체, 보수 후 반환 불가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해당 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 없음				
POS 사용료	가맹본부	월 28.6	다음 월 5일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로열티 책정기준

- 영업표지 등의 사용 대가로 로열티를 매월 말일까지 가맹점 Pos 월 매출액의 3.3%<VAT 포함>를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가맹점에서 Pos를 사용하지 않을 시 본사 물대로 월 매출액에 3배로 곱하여 매출을 산정한다.)
- 단, 당사가 지정한 요구한 품목 및 권유한 품목을 성실하게 사용할 경우에 월 일금 오십오만원(550,000원) <VAT포함> 로열티를 부과. 만약, 위반 시 가맹계약서 제33조 2항에 따릅니다.

※ 경영지도비 책정기준

-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특별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① 지원인력 일당은 지원인력 200,000원
 - ② 회 실장(기술직) 300,000원(최대 5일까지)
 - ③ 지방 출장 시 따른 숙박(1인 1실) 및 교통비(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가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항목	내용	시기	비고
매장관리	- 정기 방문 - 품질, 위생, 서비스 점검 - 월 가맹점 매출 및 손익분석 - 매장 전반 위생 상태 점검 - 인테리어·기기 A/S 접수 및 처리	정기/수시	문의: 교육팀
클레임 처리	- 고객 클레임 접수 및 처리	수시	

	- 매장 내 고객 서비스 상태 점검		
슈퍼바이저	- 가맹점 전반 환경, 위생 점검 - 가맹본부 정책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확인	정기/수시	
현장코칭	- 매장 환경, 서비스 실태 점검 - 가맹점 맞춤형 서비스 코칭 진행	정기/수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가맹사업 양도	관련 계약조문
9. “갑”이 어사출도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은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을”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갑”이 “을”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을”은 계약 해지와 함께 “갑”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 제35조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	관련 계약조문
7. “갑”이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상실 등의 사유로 더이상 이를 “을”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을”은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을”은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갑”이 “을”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을”은 계약 해지와 함께 “갑”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 제4조
8. “을”은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영업표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기 전의 영업표지는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영업표지가 부착된 상품과 기타 점포설비 등은 “갑”의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9. 영업표지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은 양 당사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사업 양도	관련 계약조문
6. “갑”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갑”은 이를 미리 “을”에게 알리고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갑”이 “을”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계약서 제31조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을”은 계약 해지와 함께 “갑”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사업 양도	관련 계약조문
5. 전항에 따른 승인을 득한 경우, “을”의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비(9,900,000원)<VAT포함>, 계약이행보증금(10,000,000원), 교육비(5,500,000원)<VAT포함>등 부담비용]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운영권을 가족에게 양도할 경우, 교육비와 가입비는 면제되며 면제는 1회에 한한다. 가족의 허용범위는 양도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 배우자까지만 인정되며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제출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서 제35조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6-3]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계약 종료 후 조치	관련 계약조문
<p>“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을”은 “갑”에게 사용 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당사는 위의 원상회복의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 잔존 채무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한 후 영업표지 철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 4.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인 당사가 직접 또는 다른 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 또는 제공하는 전화번호와 관련된 사항(매장 전화번호 및 안내문구), 인터넷상의 브랜드 명칭 사용 등 제반 영업표지 등을 표상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종료 즉시 가맹본부인 당사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사실을 입증하는 제반 증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휴업/폐업 사실증명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한다. 5. “을”은 협력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 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한다. 6.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갑”이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단, 상호협의하여 반환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 7. “을”은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하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8. “을”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 주는 행위 또는 “갑”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서 제32조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어사출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어사출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2024년 기준

2) 당사가 어사출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	-----------	--------

별첨 2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함 당사 브랜드 통일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만을 판매하여야 함	1회 위반 : 구두+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구두+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상품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서면 시정요구
다른 가맹사업자			2회 위반 : 구두+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상품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2		개별공문 발송 및 POS 공지	2024.12월 기준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권장 판매가격을 가맹점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는 설정된 영업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영업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횃집	어사출포	해당사항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설정방법	영업지역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50m를 기준으로 하며,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구역(지도) 표시
설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지역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50m를 기준으로 하여 행정구역 등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지역 구분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별첨1] 지도로 표시하여 별도 첨부 -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서술하거나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가맹점운영권을 인정. 단, 대형 쇼핑몰, 백화점, 관공서, 대학교, 휴게소, 터미널, 병원, 호텔 등 집객력이 높은 시설 내부의 독립된 상권(이하 '특수상권'이라고 한다)은 별도의 상권으로서 별도 영업지역으로 보아 타 가맹점이 입점할 수 있음

※ 당사의 직영점 및 가맹점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향후 개설 예정지)을 '미 개설지역'이라 정의하며, '미 개설지역'에 대한 신규 가맹점 개설 등의 권한은 당사의 고유권한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당사 담당팀 검토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어사출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 구분되는 점
가맹점	어사출또 어사또	수산물류	별도영업표지를 사용하고 판매방식에 차이가 있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 권유 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영업지역은 가맹점 난립을 지양하고 고유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소모성 과열경쟁을 피하여 고객을 위한 서비스·상품의 질적 향상에 보다 집중하도록 하는 당사의 정책입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의 홍보활동 및 영업지역 침범행위는 금지되며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영업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어사출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3. “갑”은 “을”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계약 갱신 요청에 대하여 다	계약서

<p>음 각호의 경우,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p> <p>① “을”이 “갑”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을”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p> <p>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p> <p>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p> <p>다.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p> <p>라.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p>	제7조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p>1. “갑”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을”에게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① “을”이 제25조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더이상 가맹점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p> <p>② “을”의 귀책사유로 제8조 내지 13조의 이행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개월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을”이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p>	계약서 제31조
<p>1.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2. 제4조 제3항에서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p> <p>3.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p> <p>4. 제15조에 따른 금전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p> <p>5. 제16조 규정에 의한 수시 교육 및 재 교육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경우</p> <p>6. 제17조 제1항 내지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p> <p>7.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p> <p>8.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p> <p>9.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저해할 경우</p> <p>10. 제21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협의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p> <p>11. 제22조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12. 제2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p> <p>13. 제26조 복장 규정 및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14. 제27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화 시설의 보수·교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p> <p>15. 제27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p> <p>1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자료 통지 및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p> <p>17. 제29조 규정의 광고비 부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p>	계약서 제25조

18. 제30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판촉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19. 제3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판촉활동을 하거나 팜플렛, 리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을 제작하여 어사출포 브랜드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을” 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5조 제1항의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21.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갑”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4. “갑”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가. 그 위반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그 위반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 처분 다. 그 위반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②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③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15일 이내의 영업정지 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을”이 본 조 제1항 각호의 위반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기재를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⑥ “을”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⑦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계약서 제31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①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조건의 수정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사전 고지 또는 교육을 진행한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①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법무팀

- ② 양수인은 잔여계약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 상의 교육비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매각 또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 의무	명의변경 절차에 준함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명의변경 절차에 준함	
대리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의 존속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이 종료된 후 2년간은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정보공개서 상 동종 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는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동일 시·군·구에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정보공개서 상 동종의 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횃집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어사출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2시 ~ 익일 새벽 03시	주6일을 원칙으로 지역여건과 주위환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결정 (단, 귀하가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점 휴무 시 운영팀과 협의하고 사전에 고객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③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일정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귀하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매장 환경 및 근무자 위생 기기장비 식품위생 서비스 및 레시피 기타(매장 비치 서류) 등	담당자 매장 방문→위생, 청결상태 등 관리 항목 확인→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근무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방문	문의 가맹관리 팀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품질관리	조리매뉴얼과 레시피 준수 여부 및 주요 식자재 품목의 선입선출, 보관방법, 유통기한 등 확인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어사출포]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50%	총 광고비의 50%	광고기획 → 가맹점사업자
	상품광고+가맹점	총 광고비의 50%	총 광고비의 50%	

	모집광고			분담금 산정 →1개월 전 분담금 통지서 발송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 판촉의 경우 사전에 동의 절차 시행 시 고지 ※ 가맹본부가 100% 부담할 경우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진행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100%	총 광고비의 0%	
판촉행사	전국 또는 지역단위 판촉행사	기획비용	판촉물의 제작비용 및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	
	기타 개별 행사	사전 협의	사전 협의	
상품교환권과 무료이용권 및 할인권 등(이하 “쿠폰”이라 함)	공동판촉활동	사전 협의	사전 협의	
멤버십 서비스	개발/유지보수/ 라이선스	100%	0%	
	프로모션 쿠폰	20%	80%	
	적립 서비스	0%	100%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독자적 광고판촉 활용	관련 계약조문
8. “을”은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단,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리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어사출또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계약서 제30조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영업비밀 보호	관련 계약조문
13. “영업 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갑”이 “을”에게 제공한 가맹점 오픈 및 경영에 관련된 다음 각목의 사항을 말하며 이는 매뉴얼 및 기타 문서, 도면, 구두 등으로 제공된다 가. 가맹점의 구조, 내·외장, 가맹점 내 배열, 가맹점의 설비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 나. 각종 메뉴 조리 노하우 다. 각종 물품 등의 구입처 라.接客방법, 판매가격, 기타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	계약서 제2조
1. “갑”은 “을”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공한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그 직원에 의한 전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3. 제2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계약서 제17조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관련 조항		관련 계약조문								
3. “을”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개점 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위약벌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한다.		계약서 제13조								
<table border="1"> <thead> <tr> <th>해약 요청 일자</th> <th>위약벌</th> </tr> </thead> <tbody> <tr> <td>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td> <td>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20%</td> </tr> <tr> <td>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td> <td>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30%</td> </tr> <tr> <td>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td> <td>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td> </tr> </tbody> </table>			해약 요청 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2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
해약 요청 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2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									
1.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2년 이내에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18조(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33조								
2. 자점매입에 따른 가맹 계약 위반할 경우, 원래 기준인 가맹점 월매출의 3.3%로 위반된 당월에 즉시 적용함과 동시에 제15조 1항 2호에서 감액을 받은 로열티를 일시불로 반환한다.										
3. “을”이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①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 매입을 1회차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자점 매입 2회차 발생한 경우, 위약별로 추가로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자점 매입 3회차 발생한 경우, 가맹점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가맹 계약서의 절차에 따른다.										
4. “을”이 제31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 처리하거나 어사출포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을”의 계약위반으로 “갑”이 2회 이상의 시정조치에도 시정이 안될 시에는 “갑”에 의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일 십만원(₩100,000원)씩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7. “을”의 귀책사유 또는 “을”의 일방적으로 임의적인 중도해지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갑”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배상하기로 한다. 배상액은 계약 해지 일을 기준으로 남은 계약일 × 오만원(₩50,000)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한도는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으로 한다.										
8. 전항과 별개로 최초 계약기간 중 양도양수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개설 시 혜택(할인·면제)을 받거나 운영 중 본사로부터 무상으로 지원을 받은 시설과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본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9. “을”은 “갑” 또는 “갑” 소속 임원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 제1항 내지 제9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갑” 또는 “을”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교부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50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입점 후보지 상권 분석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 체결	D-35~34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 보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	D-33~26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인테리어 계약 체결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2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1~6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 기기장비 조작 - POS 조작 - 서비스 - 물류시스템 - 조리 교육	D-15~10	
개점 준비	- 인테리어 시설, 집기, 초도물품 등 본사 직 원 및 점주 체크 - 가오픈	D-2~1	
개점	- 오픈 행사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면적의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분쟁해결 절차는 다

음과 같습니다.

분쟁해결 절차	관련 계약조문
1. “갑”과 “을”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갑”의 임직원 포함)과 “을” 양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2. 양 당사자의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3.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 또는 “을”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계약서 제43조

대화 및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경영지원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가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부담	문의: 경영지원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어사출포]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주류 대출	대정주류 신영주류 (지역에 따라 상이)	3,000 만원~5,000 만원(점포입지에 따라 상이)	10~20 개월분할상환	주류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조건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어사출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실습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전 메뉴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이론	- QCS 관리(식품위생과 품질관리 교육) - 친절 서비스 교육 - 점포 운영 규칙 교육 - 배달 교육 - POS 교육 및 기초 세무에 대한 이해 등	이론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조리실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교육 실습교육	수시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전 메뉴의 조리실습 계약갱신 시	이론교육 실습교육	- 고객 클레임 다수 발생 시 - 계약갱신 시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어사출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5일(점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5,500	최초 계약 시 필수 이수
보수 교육	보수 교육 운영시 별도 책정		점포 오픈 후 필수 이수
특별 교육	특별 교육 운영시 별도 책정		평가 기준에 따라 필수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 불참 시 불이익	관련 계약조문
3. “갑”은 “을”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계약 갱신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라.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계약서 제7조
2. 개점 전 교육·훈련은 정보공개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을”은 기본인원에 대하여 개점 전 교육·훈련을 반드시 수료하도록 하여야 하고, 미 수료시 “갑”은 가맹점의 개점을 불허 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서 제9조
4. “갑”은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교육대상자들의 교육수료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갑”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을”에게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제25조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더이상 가맹점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을”의 귀책사유로 제8조 내지 13조의 이행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개월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을”이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계약서 제31조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법무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www.hoolala.co.kr)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별첨4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확인서

■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제공 확인

가맹본부	어판왕 어업회사법인(주)	영업표지	어사출토
제공일시	20 년 월 일	제공받은 장소	
성명	(서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제공자	
주소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서명)

어판왕 어업회사법인(주)